

#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2
----------	-------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환경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변경하여 환경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환경행정 강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환경위원회 기능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설(안 제2조)

5. 구 환경상 심사

6.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7.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구성과 임기(안 제3조)

(1) 환경위원회 구성 인원을 “25인”에서 “15명”으로 함

(2) 위원장을 “위촉직”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을 “구 소속 4급 이상”에서 “구 소속 5급 이상”으로 변경

(3) 임기 사항 중 임기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 폐지(제5조 삭제)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상 표현 변경 및 용어 순화(안 전반)

### 3. 개정근거

-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환경과 - 15009(2010. 8. 4)

### 4. 조례안 : 따로 붙임

###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6. 기타사항

- 가. 관계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 조례」 제22조(구민참여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0. 8. 12. ~ 9. 1.(제출된 의견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로 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하며, “서울특별시마포구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기능”을 “사항”으로 하고, 제1호 중 “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제4호 중 “대기·수질·토양·폐기물”을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로 하고,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같은 호를 제8호로 하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 환경상 심사
6.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7.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하며, “2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를 “하며”로 하고,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분과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은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무”를 “업무”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2항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 부득이 한”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품위손상·장기불참”을 “품위손상, 장기불참”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하여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를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로, “인”을 “명”으로,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제반회무와 회의록의 정리·보관을 관장하도록 한다.”를 “환경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활동 및 결과조치”를 “활동과 결과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를 “사항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환경교육”을 “환경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수질·토양·폐기물”을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u> <u>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u></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u> <u>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마포구 환경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u> 21세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u>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u>의 환경보전시책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설치하는 <u>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 조례</u>」 제22조에 따라 ……            …… <u>서울특별시 마포구</u> ……            ……            …… <u>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u> ……            ……</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구 의제 21의 추진에 관한 사항</p> <p>2. ~ 3. (생략)</p> <p>4. <u>대기·수질·토양·폐기물</u>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 활동</p> <p>&lt;신 설&gt;            &lt;신 설&gt;            &lt;신 설&gt;</p> <p>5.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라 한다)이 요구하는 환경보전에 대한 자문 등</p>	<p>제2조(기능) <u>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 사항 ……</p> <p>1.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u>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u> ……</p> <p>5. <u>구 환경상 심사</u></p> <p>6. <u>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u></p> <p>7. <u>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u></p> <p>8. 그 밖에 ……</p>
<p>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3조(구성 및 임기) ① ……  <u>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u> ……</p>

현행	개정안
<p>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 4급이상 공무원 및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p> <p>③ ..... 하며, 한 차례만 연임 .....</p> <p>④ ..... 규정에도 불구하고 ..... 새로 위촉된 위원.....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p>
<p>제4조(위원장과 분과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2명의 분과위원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p> <p>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분과위원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lt;삭 제&gt;</p> <p>① ..... 업무.....</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lt;삭 제&gt;</p>
<p>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에 행정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를 둔다.</p> <p>②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행정분과위원회 : 주요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건의, 환경보전에 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p> <p>2. 실천분과위원회 :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 운동 전개,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li> <li>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li> <li>3. (생략)</li> </ol> <p>제7조(회의) ① ~ ③ (생략)</p> <p>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8조(간사)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제반회무와 회의록의 정리·보관을 관장하도록 한다.</p>	<p>&lt;삭 제&gt;</p> <p>제6조(위원의 해촉)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그 밖의 부득이 한 .....        2. .... 품위손상, 장기불참 .....        .....        3. (현행과 같음)</p> <p>제7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④ .....        .....        .....        ⑤ 위원회.....        .....        .....</p> <p>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 1명.....        ..... 환경과장이 된다.</p>



현행	개정안
<p>제9조(위원회의 활동 및 결과조치) ① 위원회는 스스로 구의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li> <li>2.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li> <li>3. (생략)</li> <li>4. 기타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li> </ol> <p>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u>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u>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단서 조항 신설&gt;</p> <p>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p>제9조(위원회의 활동과 결과조치) ① ... ..... ..... ..... 사항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 교육.....</li> <li>2.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그 밖에 .....</li> </ol> <p>② ..... 제1항에 따라 .....</p> <p>제10조(수당) .....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p> <p>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운영세칙) ..... 사항 외..... .....</p>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0월 7일(목)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0년 10월 8일(금)

**4. 개정근거**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조례 제485호, 2001.03.23)

제22조

## 5. 검토의견

0 본 조례안은 마포구 환경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환경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마포구 환경 행정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0 현행 환경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선출된 2명의 분과위원장이 맡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25인 이내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하고, 2개의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으로 제출하였는바, 현행 조례 제3조제1항 중 “부위원장 2인”도 위원 수가 축소되고, 분과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위원장 1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전문위원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p> <p>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 4급이상 공무원 및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p> <p>제3조(구성 및 임기) ① ----- 명 과 부위원장 2명-- 포함한 15명 ----- -----.</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p> <p>③ ----- 하며, 한 차례만 ----.</p> <p>④ ----- 규정에도 불구하고 ----- ----- 새로 위촉된 위원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p> <p>제3조(구성 및 임기) ① ----- -----부위원장 1명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2001.03.26 조례 제 485 호

- 제22조(구민참여 등)**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다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운영등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